성인학습자 학사 운영 규정

제정 2021. 4. 29.

제4차 개정 2024. 3. 14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조(편제) 및 제31조의9(경험학습 학점인정)에 의거 상지대학교 (이하 "본교" 라 한다) 미래라이프대학의 성인학습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9.16., 2023.3.6)
- **제2조(수업)** 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, 개설 교과목 의 경우 이 규정을 따른다.
 - ② 수업은 주중 주야간 또는 주말(토요일)에 운영한다. 다만,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절제 수업, 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 - ③ 전공과목 중 일부는 e-러닝 또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e-러닝,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학과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 - ④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3.6.)
 - ⑤ 상위학년의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장의 승인하에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 - ⑥ 학내에서 개설된 e-러닝 강의는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, 취득 성적은 해당학기 평균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(신설 2023.3.6.)
- 제3조(출석) ① 대면강의와 동시에 실시간 화상강의로 송출한 콘텐츠 또는 이를 녹화한 콘텐츠를 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 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 - 1.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: 해당기간
 - 2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: 해당기간
 - 3.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직장 내 위급상황인 경우 : 1일(학기당 1회 한정)
 - 4. 그 외 공결은 수업관리규정 제15조의2(공결처리)에 의거 결석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.
 - 5.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해당 교과목 담당

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신설 2023.3.6.)

[제목개정 2023.3.6.]

- 제4조(휴학) 학칙 제23조를 따르되, 질병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4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과 미래라이프대학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3.3.6.)
- **제5조(학기구분)**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 2학기로 나눈다.
 - ②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교육상 필요에 따라 1년 2학기제 + 계절학기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**제6조(경험학습 인정제)** ① 경험학습 인정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본교 입학 이전 국내외 타 학교·연구기관·산업체에서 학습·연구·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경험학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 범위는 (별표1)에 명시된 범위로 한다.
 - ④ 경험학습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경우 2분의 1 이내, 제3항의 경우 4분의 1 이내로 한다.
 - 5 경험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4.3.14.]

- 제7조(졸업요건) 학칙 제35조에 의하며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1. 8학기 이상 등록한자, 다만, 조기 졸업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(개정 2023.3.6.)
 - 2. 130학점 이상 취득자
 - 3. 삭제 (2023.3.6.)
 - 4. 삭제 (2023.3.6.)
- **제8조(장학금)** ① 장학금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 - ②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국가 지원 및 지자체를 통한 장학금(이하 "LiFE 장학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중복지원 인정범위는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. (개정 2023.3.6., 2023.3.31)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시행세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LiFE 장학금을 수강학점 기준 3학점 이하일 때 6분의 1, 4-6학점일 때에는 3분의 1, 7-9학점일 때에는 2분의 1, 10-16학점일 때에는 5분의 3, 17학점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 (신설 2023.3.31)
- 제9조(K-MOOC 강좌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) ① 본교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총장이 승인하여 이수한 K-MOOC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K-MOOC 강좌의 수강신청 및 교과구분,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K-MOOC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수강신청하며, 교학지원팀에서는 본교 장바구니 신청기간 이전에 수강신청(학점인정) 명단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K-MOOC 신청학점은 본교 정규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6.)
- 2. 이수한 교과목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- 3.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4. 학기당 최대 3학점,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을 인정한다.
- 가. 학습인정 시간이 650분(13주×50분) 이상 1,300분 미만인 경우 : 1학점 (개정 2023.3.6.)
- 나. 학습인정 시간이 1,300분 이상 1,950분 미만인 경우 : 2학점 (개정 2023.3.6.)
- 다. 학습인정 시간이 1,950분 이상인 경우 : 3학점
- 5.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에 한한다.
- 6. K-MOOC 강좌의 학점은 P(Pass)로 평가하고, 신청한 학점은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 정한다.
- ② 정부 출연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컨텐츠 중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과정에 한하여 제1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9.16.]

부 칙 (기획예산팀-275, 2021.04.29.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5301, 2022.09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동 규정 개정 시행 전 2022학년도 2학기에 K-MOOC 강좌를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정규학 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54, 2023.03.06.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714, 2023.03.31.)

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93, 2024.03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같은 규정 개정 시행 전 2023학년도 1학기에 경험학습 인정제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이 개정 규정과 동일한 기준의 경험학습 학점인정 범위를 적용한다.

(별표 1) (신설 2024.3.14.)

경험학습 학점인정 기준표

구분	기관	인정학점	비고
형식 교육	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	8학점 이내	교양과목에 한함 (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)
	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 한 학점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•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, 학사학위에 한함(석사학위이상은 제외)	15시간 (1학점)	_
	- 「병역법」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 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*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제출 시(국가평 생교육진흥원 발행)	6학점	원격교육학기당 3학점 이내 (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)
비형식 교육	-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11조에 따라 대한민 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	20학점	학기별10학점
	-숙련기술장려법」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	15학점	-
	-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	금상 (6학점)	-
		은상 (3학점)	-
	- 「숙련기술장려법」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 람	금상 (15학점)	-
		은상 (12학점)	-
		동상 (9학점)	-
	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	30시간 (1학점)	수료증&교육내용
	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,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	최대 6학점	산업기사(6학점), 기능사1급(6학점), 기능사2급(3학점), 기타 교육과정 이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(3학점)
무형식 교육	-국내.외의 다른 학교, 연구기관 또는 산업 체 등에서 학습, 연구, 실습 경험 및 산업 체 근무경험 (1년 이상 근무 경력에 대해 서만 인정) *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기준	1년 (1학점) 최대 (15학점)	필기 또는 실시시험 후 학점 인정 (학부(과) 학점인정심의위원회)
	- 「고등교육법」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군복무경험 (사회봉사, 인성함양, 리더십 과목으로 학점 인정)	3학점 이내	군경력증명서 (별도의 양식인 학점인정 신청서에 의거 학점처리)